

생물다양성에 대한 WTO TRIPS 논의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미경(mkyun@kiep.go.kr)

1. 여는 글

생물공학산업은 오늘날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미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은 이러한 생물 산업 및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향후 국제경쟁력 원천의 일부이다. 근래 이러한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및 정보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이의 규범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분야에서도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불허 규정에 대한 재검토, 유전자 연구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두된 유전자에 대한 특허보호 문제 및 유전자원 공유 문제,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주요 규정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제공자와 기술개발자간의 이익공유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TRIPS와 CBD간의 관계에 대한 TRIPS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후원 하에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나이저리아,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4년에 가입하였다.²⁾

1) 본 글은 대부분 윤미경·최윤희(2002)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2) CB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물공학연구원(2001)의 생물다양성협약 해설집을 참조. 여기서는 TRIPS협

협약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보존, 과학적·기술적·제도적 역량 개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만큼 모든 기술분야에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TRIPS협정과는 여러 측면에서 대립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CBD가 가지는 가장 큰 효과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던 유전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 일 뿐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³⁾

CBD의 주요 내용 중 TRIPS협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8조j항, 제16조, 그리고 제19조이다(<표 1> 참조). CBD 제15조는 국가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의 정부에 있고 정부는 국내법에 의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연구활동은 되도록 유전자원 제공국에서 진행하되 제공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며 연구결과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국(특히 개도국의 경우)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제19조). 동시에 협약은, 접근에 대한 대가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함께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통지식을 활용하였을 때에는 전통기술 보유자에 대한 평등한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j항).

정과 관련된 부분만을 논의함.

3) 이 부분은 NGO들이 CBD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이나 토착주민들이 그들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생물다양성을 상업화하거나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하여 독점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통지식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GAIA/GRAIN 2000). 이러한 논의는 중요한 것이지만 본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표 1> CBD와 TRIPS협정간의 대립 요소 비교

CBD	TRIPS	분쟁요소
<p>국가는 생물다양성을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인정, 모든 종류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여 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것.</p>	<p>공공건강, 영양, 공공의 일반적 이익의 보호를 존중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조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적권 소유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TRIPS 협정에 따라야 함.</p>	<p>CBD는 공공의 이익과 공통의 이익을 사적인 재산권과 이익에 우선하고 있으나 TRIPS협정은 그 반대임.</p>
<p>생물다양성의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 혁신, 관행은 지적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그의 이용에는 이익공유가 따라야 할 것 임(8조, 10조).</p>	<p>특허는 모든 기술분야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물자원 이용 기술은 지적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나 전통적 지식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또한, 특허소유자와 자원제공자 사이에 어떠한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음.</p>	<p>CBD는 개도국에게 이익공유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나 TRIPS협정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무효화함.</p>
<p>국가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공공의 주권을 소유함(제15조).</p>	<p>생물자원은 사적 지적권의 대상이 되며, 국가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함</p>	<p>국가주권은 국가가 생명체(생물자원)에 대한 지적권을 금지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함. TRIPS협정은 미생물, 무생물/ 미생물 생산과정, 식물변종에 대한 특허 및 고유한 보호를 인정하는 지적권 조항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주권을 부인함.</p>
<p>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여 생명공학 기술의 제공과 이전을 촉진하고,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 관련된 모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것을 규정. 특히 제16조 C항은 특허권이 협약에 반하지 않도록 국내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할 것을 규정(16조, 17조).</p>	<p>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의무 조항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지적권 보호를 보장하고 생명체 및 식물다양성에 대한 사적 지적권을 명시하고 있음.</p>	<p>TRIPS협정이 CBD의 목적 또는 규정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음.</p>
<p>생물자원의 이용에는 동등한 이익의 공유가 따라야 할 것임. 또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자원 제공국에 의한 사전통보승인 및 지역사회의 승인과 참여를 요구함(19조).</p>	<p>특허는 모든 기술분야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물자원의 접근, 그리고 이용은 지적권에 의해서만 보호됨. 사전통보승인의 요구 및 특허소유자와 자원제공자 간의 이익공유 체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p>	<p>CBD는 개도국에게 이익공유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나 TRIPS협정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무효화함.</p>

자료: 윤창인 (1999: 185)의 표를 보완·수정.

여기에는 금전적 이익은 물론 생물공학기술 또는 환경기술 등 관련된 기술의 이전 및 공동연구 등도 포함된다(제16조). 제16조5항은 협약당사국은 특허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문제가 동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적재산권들이 협약의 목적에 도움이 되고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TRIPS협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CBD 제16조5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경우 특허의 불허, 이미 취득된 특허의 무효화나 강제실시 등이 가능함을 의미하는데, TRIPS협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는 보통 CBD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사항들을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허여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TRIPS협정은 전통적인 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없다. 생명체 또는 생물자원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활용 기술만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CBD는 협약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해 사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이하 본 가이드라인)”은 2002년 4월 제6회 CBD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3. TRIPS이사회에서의 논의

TRIPS이사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협정간의 관계는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TRIPS협정 제27.3(b)조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TRIPS협정 타결당시 동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생명체와 유전자의 특허보호 문제, 농부권(farmer's rights)의 보호, 식물변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 제공자와 기술개발자간의 이익공유 문제 등에 대해 회원국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종의 타협으로 동 조항을 1999년부터 재검토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생물공학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문제가 TRIPS이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회원국간에 별다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채 지난 도하 각료회의에서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간의 관계”를 우선 협의 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였다.

TRIPS협정은 동물과 식물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미생물은 특허로 보호하도록 하고 식물변종은 특별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 대상을 다루고 있는 TRIPS협정 제27조는 일정한 예외와 조건하에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예외조항 중 하나는 제27.3조이다.

회원국은 제27.3(a)에 의거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쟁점이 없으나 제27.3(b)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3(b)는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 조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RIPS이사회 논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유전물질에 대한 특허를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인도와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의 개도국 회원국들은 미생물의 특허를 인정하는 TRIPS협정의 현행 체제에서는 자연 상태에 있는 유전자원, 그리고 단순히 분리만 되고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특허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상태에 있는 미생물을 단지 발견하는 것만으로 특허가 부여된다면, 특허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3대 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응용성)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Bristol Myer사가 1991년 인도 하이드라바드 (Hyderabad)지역 토질에서 발견되는 *Streptomyces Vioaceus*라는 미생물의 특허(미국특허 번호 4992376)를 취득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인도는 유전자 특허의 경우 미생물의 유전자가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인 경우 이는 특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물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TRIPS협정 하에서 특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인도 제안서 1999 <IP/C/W/161: 2-3>).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유전적 변형(genetic modification)이 없는 경우에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상태에 있는 생물체 자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허화된 유전물질을 제3자가 연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적인 특허조건을 두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으로 더욱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전물질에 대한 특허를 허용한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유전자 보유국의 주권을 확보하여 그 국가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특허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기술개발자와 유전자원 보유국이 나누어 가지는 이익공유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다자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현행 TRIPS협정의 관련규정이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BD협약은 자연발생적인 생물체에 대한 유전자원국 국가의 주권을 선언하며 이러한 자원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TRIPS협정 상 보장되는 특허권이 이러한 생물체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포괄한다면 양 협약간 법적 불일치가 초래된다. 특허는 자연발생적인 생물체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여 그러한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해당 특허가 유전자원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원된 경우 유전자원국의 주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미생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두 협약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브라질 제안서 1999 IP/C/W/228: 4-6).

<그림 1>은 이러한 개도국들의 우려를 잘 나타내 주는 최근의 유전자원 관련 특허 분쟁 사례들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주로 국제협약을 어기거나 유전자원 보유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전통적 지식에 의거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상업화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이 만족할만한 정도의 이익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1> 유전자원 관련 특허 분쟁사례

<인도의 바스마티 쌀>

바스마티(basmati)는 힌두어로 향기를 뜻하며 바스마티 쌀은 긴 낱알 모양의 향기롭고 끈기 없는 고품질의 쌀로 인도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만 경작되어 왔는데 1997년 미국 텍사스의 곡물회사인 RiceTec社가 동 품종을 개량, 미국에서 경작하여 1997년 미국특허(US Patent No. 5663484)를 획득하였다. 특허 청구의 요지는 출원 품종이 바스마티 품종과 같거나 향상된 품질을 보유한다는 것이며 미국의 특정지역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는 것이다.

인도의 농업·가공식품 수출개발청(Agriculture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APEDA)은 동 특허의 무효화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RiceTec社는 특허 청구범위 20개 부문 중 원 바스마티 품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4개 부문만을 취하하였고 2001년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특허명칭이 “Basmati Rice and Grains”에서 “Rice Lines Bas 867, RT 117, RT 121”로 변경되었다. 당시 특허 전체의 재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나머지 청구부분은 특허가 허용되었다. 취하된 RiceTec사의 특허품종은 원 바스마티 품종과 미국 쌀품종과 단순히 교배하여 얻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용된 생식질(germplasm)의 출처는 미국 Fort Collins의 유전자은행이며 동 종자은행에서 보관하던 종자는 국제 유전자은행(CGIAR) 산하 기관인 IRRI에 보관되어 있는 종자의 복제본이라고 한다.⁴⁾ 그후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법적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청구범위의 15개 부문을 취하하고 다른 두 부문은 수정토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인도는 2001년 현재 약 350백만달러, 그리고 파키스탄은 약 250백만달러의 바스마티 쌀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세계 바스마티 생산량의 1%의 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RiceTec사가 세계시장에 수출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의 님나무>

님나무(neem: *Azadirachta indica*)는 인도 전역에 자생하는 나무로 추출물인 azadirachtin에는 뛰어난 살충효과가 있다. 이는 인도에서는 널리 알려진 지식으로 과거 몇 천년 동안 님나무 추출물은 의약품, 세정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더해 인도의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Malaria Research Centre, Tata Energy Research Institute, 그리고 Khadi and Village Industries Commission (KVIC)등은 님나무의 효력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저렴한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KVIC가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법이나 상품들은 인도의 특허법이 농업 및 제약제품의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미 알려진 지식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내에서는 특허화되지 못하였다.

님나무의 종자는 1971년 한 재목수입자에 의해 미국에 처음 수입되어 1985년 특허를 받았으며 그후 WR Grace사에 동 특허를 이전하였다. 현재에는 12개이상의 특허가 미국회사와 일본 회사에 의해 출원되었다. 현존하는 특허들은 추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통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당 추출물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합성된 적은 없다. 한편, Grace사는 님 추출물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 님나무 공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님나무 종자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 결과 님나무 종자가격은 지난 20년간 톤당 300루피에서 3000-4000루피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인도내의 소비자가 수용하기 힘든 이러한 가격대가 수출시장에서 유지될 수 있는 한 님나무 공급에 대한 통제 또는 접근권은 조만간 미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다국적기업에게 편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유럽특허청은 WR Grace사의 님나무 추출물에 대한 특허를 신규성, 혁신성 및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WR Grace사가 출원하였던 추출방법은 이미 인도에서는 널리 알려진 방법이며 추출물의 사용 용도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님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살충제에 대한 특허 무효화 소송은 미국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이 경우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유전자원의 채집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 CBD협약에 비추어 보면 사전승인이나 물질이전계약 등은 없었던 사례이며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 차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비롯되었다. 또한 전통지식에 근거한 특허라는 점에서 중요한 관할권인 EU에서는 특허의 신규성이 인정받지 못한 사건으로, TRIPS이사회의 생물공학 특허 및 CBD협약 관련논의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짐바브웨의 "swatzia madagascariensis"뿌리>

스위스 루잔대학(University of Luasanne)의 Kurt Hostettman교수는 짐바브웨 전통 치료법에 의존하여 swatzia madagascariensis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한 특허(US Patent No. 5929124)를 취득하였다. Hostettman은 로열티의 50%를 짐바브웨의 National Herbarium and the Botanical Garden 및 짐바브웨대학 약학대에 분배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동 계약은 물질이 상품화되었을 경우 이익공유가 다시 협상되어야 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짐바브웨의 유전자원 접근 관련법은 유전자원 수요자는 정부와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의 계약에는 유전자원 접근을 통제하는 짐바브웨의 환경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전승인을 발부한 바 없으며 전통지식 보유자들도 사전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1997년 루잔대학은 미국 제약회사인 Phytera사와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 의하면 루잔대학은 순매출의 1.5%를 로열티로 받는 대신 Phytera에게 전세계 독점 기술실시권을 이전하였다. 짐바브웨대학은 루잔대학과 Phytera사와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동 물질은 유전자원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상품화되어 얻어질 수 있는 전체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설정 받지 못하고 그의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만 이익공유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익공유 로열티가 매우 낮아진 경우이다.

<태국의 자스민 쌀>

미국 플로리다 대학, 알칸사스주, 그리고 미국농무부(US Departement of Agriculture: USDA)는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태국산 자스민 쌀의 변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스민 쌀의 생식질은 1995년 IRRI로부터 물질이전 계약 하에 이전 받은 것인데 당시에는 신의협약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계약에 명시하는 표준절차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때였다. 만약 미국이 개발한 변종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고 동 변종이 성공적으로 상업화 된다면 10억달러 규모의 태국 쌀 수출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세계 쌀 수출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자스민 쌀은 고유의 향기로 인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 다우림의 아야후아스카줄기>

아야후아스카(Ayahuasca)는 아마존 다우림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원주민의 전통적 의식에 사용되어 왔다. 로렌 밀러라는 사람이 이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물질(Baisteriopsis; 특허번호 5751)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가 국제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무효화 신청이 있는 후 신규성이 부족하고, 야생으로 발견되며, 원주민에게 신성한 식물이 사유재산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1999년 무효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 특허가 항소심 판결에 의해 다시 허용되었다. 한편, 미국 특허제도에 의하면 처음에 성공적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였던 자는 재심사에서 대항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의 노란콩>

Pod-Ners사는 1994년 멕시코에서 노란콩(yellow bean)을 구입하여 미국에서 1999년 특허를 취득하고(Enola 콩: 특허번호 5,894,079) 미국에서 그 이전부터 멕시코산 노란콩을 판매하던 두 개 회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Pod-Ners사는 자사 특허의 내용을 수정, 청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16개의 소규모의 미국 콩 종묘회사 및 농부들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위 특허는 특정 농도의 노란색 종자를 가진 모든 콩 종류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멕시코 농부들의 수출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수출회사는 Pod-Ners사가 특허취득 후 모든 콩 수입자들에게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사 수출 매출액이 약 90%나 하락하였다고 한다. 한편, 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CIAT)는 2001년 신규성 부족, 비차명성, 그리고 기존 문헌의 무시 등의 이유로 위 특허의 무효화를 신청한 바 있으나 2001년 현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CIAT는 16개 CGIAR 산하기관 중 하나로, 동 기관의 유전자 은행은 2,7000종의 종자를 소장하고 있다. Pod-Ners사가 CIAT로부터 관련 종자를 이전 받지는 않았지만 CIAT는 당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260개종의 노란색 종자 콩시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6개종은 물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종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주: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CIGAR)은 FAO와의1994년 신의협약(Trust Agreement)에 따라 농부들이 채집하여 산하 기관에 보관을 위탁한 종자는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 IRRI =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필리핀 소재.

자료: Watal (2001: 272), The Economic Times, New Delhi, 28 September 1999. SUNS 2000. Martin. 2002. Vandana. 2002. SUNS 2001 (April 26). ETC Group News Release. 2001. 11. 30. ETC Group Communique Issue #75. March/April 2002.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RAFI) News Release. 2001.1.5.

특허 출원자가 원 품종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특허의 청구범위가 광범위하여 단순히 기존 품종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농부나 사업자가 원 품종을 이용하는 것을 특허침해로 간주, 자체 육종이나 수출을 차단하여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도국들은 TRIPS협정 27.3(b) 또는 29조(특허의 공개 조건)을 개정하여 특허허여 시 다음 항목들을 공개(disclosure)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개도국 공동제안서 2002. <IP/C/W/356>)⁵⁾

- (1) 출원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유전물질의 출처
- (2) 출원된 특허 기술이 원용한 전통지식
- (3) 유전자원 공급국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사전승인의 증거
- (4)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개도국들은 이러한 조건들은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협의된 CBD가 요구하는 사전승인 및 이익공유의 조건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여러 회원국들이 이미 CBD의 이행을 위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입법화하고 있지만 국내법과 자발적인 사적계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시·감독의 비용이 너무 크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 나아가서, 일단 유전자원이 국외로 반출된 후에는 국내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특허 허용 결정당시 일일이 이를 반대하거나 이미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부담은 특허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전물질 특허의 경우 제안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4) 이외에도 상당수의 무단채취 및 우려될 만큼 광범위한 특허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분야에서 활발한 감시자인 ETC Group이라는 캐나다 환경 NGO 자료를 참조(<http://www.etcgroup.org>). 상업화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소유권이 여러 다른 주체로 이전되어 원 출처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비밀스럽게 유전자원을 반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유전자원국의 법을 무시하고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강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도 이미 필리핀 등지에서 선진국들과 함께 이러한 무단채취를 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표본이나 상업적 규모의 유전자원이 필요한 경우 원출처지 외의 경우를 의도적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다.

5) 동 제안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브라질, 중국, 큐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이다.

기존의 특허 신청절차보다 특별히 복잡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서, TRIPS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제안된 공개요건들이 WTO 분쟁해결의 대상이 된다면 CBD상 요구되는 물질이전이나 전통지식의 전수에 대한 계약을 촉진하게 되고 법적 확실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⁶⁾ 미국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그 출처가 되는 유전자원 실물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허는 다만 추출되고 가공되어진 유전자를 발명자이외의 제3자가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역설한다. TRIPS협정상 자연의 상태에 있는 생물체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기술적 공정, 분리(isolation), 정화를 통하여 그 전에는 별도의 개체로 알아볼 수 없던 새로운 개체가 나타난다면 이는 충분히 인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원 보전과 특허와는 관계가 없다. 나아가서, 유전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TRIPS협정과도 관계가 없다.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협정은 상호충돌 하지 않으며 회원국은 두 협정에 대한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미국제안서(2001 <IP/C/W/257>)는 생물다양성 협약 제8(j)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이 보전되고 이들이 새로운 지식창출에 더욱 널리 활용되어 이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공정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발굴하고 체계화 또는 데이터 베이스화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소유자의 사전승인과 물질이전 계약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또한 특허 심사자가 참고하여 출원된 생물공학기술이 실지로 신규성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CBD협약의 이행과 TRIPS협정의 이행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조는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며 사전승인 및 물질이전계약의 체결 등 접근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 자국 유전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를 국내법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6) 노르웨이가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도국의 TRIPS협정 개정 제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 제안서 2001. <IP/C/W/284>).

TRIPS협정의 어떤 조항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생물공학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규정하는 CBD협약 제19조는 제15조에서 언급하는 계약을 통해 보장될 수 있으며, 특히 특허가 존재할 경우 유전자원을 활용한 기술이 제3자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율하는 TRIPS협정과 CBD협약이 보완적으로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CBD협약에서 요구하는 유전자원 이용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전통지식의 남용이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취소하거나 국내법에 의거하여 계약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 유전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도 이러한 제도적 체계가 잘 형성되어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사용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특허의 공개요건 중 하나로 하는 것은 출원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출처국에게도 효과적이지 않다. 우선 전세계에서 출원되는 특허를 모두 감시·감독하기가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전물질의 출처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도국들이 제안한 형태의 공개조건은 특허출원자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이며, 법적, 행정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는 특허취득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허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도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리한 환경은 오히려 기술개발자들로 하여금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비밀로 하게 할 개연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고 유전자원 보유자에게도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미국 제안서 1999. <IP/C/W/162>: 4-5).

따라서, 특허가 출원되는 상업화 단계에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시작단계에서 유전자원 접근이나 향후 이용에 대한 조건 설정 및 사전승인 등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활용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를 특허 출원시 밝혀야 한다는 조건은 이러한 계약의 한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관할권의 문제를 규정하거나 제3자에 대한 지식 또는 물질

이전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제안서 2000 <IP/C/W/209>: 5-6). 한편, 이러한 계약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적절한 집행 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하며 유전자원 보유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U는 전반적으로 선진국 의견에 동의하나, 보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TRIPS협정과 CBD협약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양 협정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EU는 양 협정간에 법적 충돌은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U제안서 2001 <IP/C/W/254>). 당장에 TRIPS협정을 개정하기보다는 생물공학연구에 유리한 지적재산권 체계를 유지하면서 TRIPS협정과는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유전자원 및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다자체계 또는 다른 해결방안을 협상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체계가 먼저 구축된 후, TRIPS협정에 어느 정도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출한 제안서에서 EU는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CBD관련 문제가 제27.3조의 검토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TRIPS이사회에서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다만, EU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공개요건이 특허허여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과 공개요건 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지적재산권제도나 법체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이며 다자적인 공개제도에 대해 TRIPS이사회에서 논의하기를 제안하였다. 나아가서, EU는 미생물의 정의를 명확히 협정에 명시하는 것은 생물공학 분야의 빠른 발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TRIPS협정의 유연성을 훼손하지 말고 어떤 미생물이 특허가능한지는 각 회원국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EC제안서 2002 <IP/C/W/383>).

호주나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대체로 선진국의 입장을 따르면서 TRIPS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는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세계적으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국내법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국내규율들이 얼마나 잘 기능 하는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위 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가 TRIPS이사회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인 WIPO나 CBD 등에서 이루어진 후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TRIPS이사회에서 재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TRIPS이사회 회의록 2002 <IP/C/W/36/Add.1: 44-59>, <IP/C/W/37/Add.1: 44-63>).

4. 최근 현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TRIPS이사회 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다. TRIPS이사회 내에서의 논의는 별로 활발하지 않다. 올해 9월 개최될 칸쿤 각료회의 전 마지막으로 열린 2003년 5월 정례회의에서도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새로운 제안으로서 유일한 것은 최근 스위스가 TRIPS협정의 개정을 회피하면서 유전자원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장하는 특허협력조약(PCT) 및 특허법조약(PLT)을 개정하여 국제특허 출원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이를 실행치 않으면 국가별 특허부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사전승인이나 이익공유 등은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므로 특허제도로 다룰 수 없는 문제이며, 또한 사전적 증거 제시가 어려워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나 출처공개는 사전승인과 이익공유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은 다양하여 페루는 스위스 제안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익공유, 유전자원 보호 등이 전문지식 없는 개인적, 지역주민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브라질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EU나 캐나다 등은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전자원 보호,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mmittee)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 맺는 글

한국은 외국에 비해 유전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생물공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중간자적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윤미경·최윤희(2002)가 한국의 유전자원 및 이를 활용하는 생물공학기술의 경쟁력에 대한 실증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한국의 입장을 재검토 한 결과 예상한대로 유전자원 관리체계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동·식물 천연 식물자원의 DB사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식물 천연 식물자원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 DB사업이 대부분 기존의 자료·문헌 위주의 사업이며 유전자원의 발굴 및 창출과 관련된 항목들도 평균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미래지향적인 경쟁력과 직결되는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각종의 연구개발 사업 결과 발굴되는 유전자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연계 및 관리 체계는 대부분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적인 유전자원 관리체계에서는 유전자원의 개발 및 창출, 이의 DB화, 그리고 각 DB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부문에 대한 투자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의 발굴에 의한 기존의 정보 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DB화나 네트워크화는 유전자원 관련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생물공학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한국의 유전자원 활용 기술 수준을 주로 관련 분야의 특허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의 유전자원 활용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등 이 분야의 선두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이미 보편화된 기본적인 유전공학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쟁력은 유전공학 기술 중에서도 표본에서 미생물, 균주, 유전자 등을 선별, 분리, 정제, 가공하고 발효를 통하여 대량 생산 해내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물의약분야나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⁷⁾ 즉,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생물공학 기술은

7) 생물산업의 분야별 무역수지를 보면 생물의약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유전자원을 가공하는 가장 초기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한국의 생물공학기술이 전반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분야의 생물공학이 이미 성숙한, 보편화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기술이 다양한 생물종의 확보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유전자원 관리현황 평가에서 바로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원 발굴 및 창출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기술의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국내 유전자원 관리현황 평가 결과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유전자원 관련 사업 중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원 관련 분야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부터 두 가지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발굴될 수 있는 미생물 유전자원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국내에서의 발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보다는 국제적 발굴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만약 첫 번째 추론이 사실이라면, 이미 발굴된 미생물에 대한 DB작업이나 네트워크화 사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생물 산업, 또는 생물공학기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의 유전자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원된 유전자원 활용 특허들이 주로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한 것을 보면 향후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특허는 원 천연물질과의 관계가 신물질 개발하였을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전자원 제공자와 분쟁에 휘말릴 소지 또한 상대적으로 큼을 시사한다. 나아가서 국제시장에서 한국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유전자원 보유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나 대만 등과 경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중국도 곧 이러한 경쟁상대의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전자원 보유 및 관리실태와 유전자원 활용기술의 수준을 감안하면 TRIPS이사회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은 EU의 중도적인 입장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사적계약 논리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는 동 분야의 경쟁력이 신약이 아니라 일반의약품(generic)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나 이것이 무조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과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유전자원 보유국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안정적인 유전자원의 공급에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 이미 CBD의 가입국이며 적어도 국내의 유전자원은 국내의 연구자나 개발자에 의해 충분히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규제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생물공학기술을 중심 기술로 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외적으로 자원부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특유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전자원관련 분야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이루어,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암묵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등의 유전자원 접근 통로를 보다 투명화하고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윤미경·최윤희(2002), 『DDA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2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2003), 「TRIPS이사회 2003년 1월 및 6월 정례회의 출장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1999),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환경 관련사항 분석」.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 서울: 환경부.

WTO TRIPS 이사회 각국 제안서.